

火 保 法 令 改 正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 施行令이 1983年 8月 18日 改正됨과 동시에 同 施行規則이 同年 12월 15日 改正되었다.

이에 따라 關係者 諸位의 이해를 돕고 業務에 參考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改正內容을 要約解説함과 아울러 개정 法令 全文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I. 火保法 施行令 改正

1. 沿 革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이하 “火保法”이라 한다)이 1973年 2月 6日 法律 第2482號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의 施行을 위해 1973年 5月 11日 大統領令 第6670號로 火保法 施行令이 制定 公布되었다.

1974年 12月 31日 大統領令 第7466號로 同施行令 第1次 改正을 통해 工場건물이 특수건물로 추가되었고, 그 적용지역이 서울, 釜山, 大邱市에서 仁川, 大田, 光州, 全州市가 추가되었으며, 社員社가 出捐하는 協會費는 社員社의 收入火災保險料의 7%가 협회 대형 공동 인수수입 보험료의 20%로 變更되었다.

이어 지난 1983年 8月 18日에는 大統領令 第11208號로 同施行令이 第2次로 改正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을 略述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特殊建物條項 補完

화보법시행령 제 2조의 특수건물조항에는 關係法令의 條文을 依用하고 있는 것이 많다.

依用關係法令이 개정됨으로써 조문이 바뀌어

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화보법시행령에 이를 반영하여 정정하거나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市場法 第2條 第3號의 市場”은 “市場法 第2條 第2號의 市場”으로 바뀌었다.

1982年 7월 1일에 市場法이 전면 改正됨으로써 市場法의 市場區分上 대체적으로 舊市場法 第2條 第3號의 市場(建物內 市場)은 現行 市場法 第2條 第2號의 市場인 常設市場(建物內 市場)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현행 시장법은 시장허가조건등이 종전보다 강화되었지만 경과조치에 의해 既存市場은 현행법상의 市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新·舊火保法 施行令上 特殊建物適用對象如何에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改正令에 의한 常設市場은 현행 시장법상 허가조건등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新規 特建發掘時 참고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許可權者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며, 건물의 자기소유분 또는 직영점포가 허가건물면적 또는 매장면적의 30% 이상이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상법상의 會社이며 그밖에 건물면적, 매장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諸條件이 충족되어야만 상설시장許可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食品衛生法施行令上의 遊興飲食店中 地方稅法施行令에서 規定하는 요리점·무도장·카바레·바”는 “食品衛生法 施行令上의 遊興飲食店”으로 바뀌었다.

증전에는 遊興飲食稅가 地方稅로 되어있어 유흥음식점을 地方稅法令에서 第1,2,3種으로 區分하고 있었던 바, 火保法 施行令에서는 그중 第1種 業인 요리점·무도장·카바레·바만을 특수건물로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國稅로 이과됨으로써 지방세 법령에는 그 관계조문이 삭제된 까닭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상의 유흥음식점중 어느 범위까지가 특수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 업종인가 여부가 모호하였고, 또한 유흥음식점은 그 모두가 多數人이 出入하는 場所로서 安全管理狀態가 비교적 취약한 점등을 감안하여 모든 유흥음식점이 특수건물적용 業種에 該當되도록 補充한 것이라 생각된다.

現 食品衛生法施行令은 유흥음식점을 극장식당·바아·비어홀·살롱·요정 등의 일반유흥음식점·카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 등의 무도유흥음식점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으로 細分하고 있다.

세째, “輸出産業工業園地 開發助成法에 의한 工業園地內의 工場”이 “工業園地管理法上의 工業園地中 韓國輸出産業工業園地內의 工場”으로 바뀌었다.

工業園地는 원래 各關係法令에 의해 助成되고 이 助成된 工業園地의 管理는 工業園地管理法에 의해 管理하게 되어 있다. 다만,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만은 輸出産業에 관한 工業園地를 助成할 뿐만 아니라 管理에 관한 事項까지도 규정하고 있었던 바, 1978년 1월 30일에 同法이 폐지되고 同法에 의해 조성된 韓國輸出産業公園의 工業園地는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해 관리토록 되어, 改正令은 이 내용대로 그 文句를 補完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특수건물 대상으로 적용되는 韓國輸出産業工業園地內工場은 그 園地가 소재하는 지역

중 서울 영등포구와 인천직할시에 위치하는 工場에 限定된다.

3. 身體損害賠償責任保險金額 引上

火保法上의 身體損害賠償責任保險金額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他人의 身體의 損害(사망·부상)에 대하여 건물주가 부담하는 無過失賠償責任의 最高限度額이며, 따라서 이 責任을 擔保하는 保險의 義務의 加入을 통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保險金의 最高限度額을 意味한다.

이 保險金額을 증전보험금액의 10배로 引上함으로써 死亡의 경우에는 500만원, 負傷의 경우에 傷害級別(1~12級)에 따라 400만원~20만원으로 改正되었다.

이로써 보험계약자 또는 被害者의 신체손해에 대해 充分한 補償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負傷의 경우에는 그 支給保險金이 傷害를 치료하는데 所要되는 모든 費用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產災保險과의 관계, 의료보험과의 관계(치료비중 自己負擔分만을 위의 치료비용으로 볼 것인가 如否)등 保險金支給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4. 協會費出捐條項 補完

火保法上 社員社는 협회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費用인 協會費를 出捐토록 되어 있는 바, 현재 협회가 代行하고 있는 社員社共同引受保險料 收入의 20%로 하고 있다.

改正令은 이 以外에도 協會의 火災豫防活動 등과 관련되는 保險料收入(共同 引受分 除外)中 一定 金額을 협회에 출연토록 하는 根據를 마련하였다.

이는 금융기관관계보험「물」의 해제로 協會費 減少라는 어려운 여건下에서도 협회의 고유업무인 防災活動은 持續的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인 판단과 협회의 방재활동의 결과, 이와 관련되는 보험의 保險事故가 輕減됨으로써

社員社인 保險會社에도 利益을 가져왔다는 點에서 이번에 새로이 新設된 것이 아닌가 본다.

II. 火保法 施行規則

1. 火保法 施行規則 改正現況

火保法 施行規則은 1873년 6월 6일 재무부령 제956호로 제정되어 1974년 1월 10일(부령 978호), 1975년 4월 26일(부령 1100호), 1977년 3월 29일(부령 1248호), 1983년 12월 15일(부령 1590호) 등 4회에 걸쳐 改正되었다.

제 1차 개정시에는 특수건물의 시가결정방법(제 2 조의 2)이 新設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수건물(평당가액) 시가결정 기준액표가 만들어졌다.

제 2차 改正에서는 특수건물의 시가결정시 기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時價를 加減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協會費는 협회가 공동인수한 保險料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變更되었으며 출연시기도 每月當月分을 익월말까지이던 것을 매순기분을 순기 말일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하였다.

제 3차 改正에서는 工場의 기계설비 및 부대장치에 대한 평가방법이 第 2條의 2로 新設되었으며 특수건물의 時價加減率이 100분의 10으로 下向 조정되었다. 그리고 특수건물 시가결정 기준액도 新設후 처음으로 현실화 시켜 改正되었다.

1983년 12월 15일의 제 4차 改正에서는 특수건물의 시가평가방법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기준액의 加減率을 2차 改正시의 100분의 20으로 다시 환원시켰다.

2. 時價 決定方法 多樣化

특수건물의 時價가 火保法 施行規則 第 2條의 第 2項 특수건물 시가결정방법에 의해 別表의 특수건물 시가결정 기준액표에 따라 결정하던 것이 금번 改正으로 결정방법이 다양해졌다.

그 개정된 內容을 살펴보면

첫째,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금 5억원이상, 100인이상의 공인감정사를 고용하고 財務部長官의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감정 평가한 감정서에 의한 價額 둘째, 증권거해법에 의한 上場法人인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價額

셋째, 上記에 의한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전과 같이 특수건물 시가결정 기준액표에 의한 價額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특수건물 시가결정 기준액표에 의한 경우 종전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10까지 加減할 수 있었으나 개정후에는 100분의 20까지 가감할 수 있게되어 保險者의 재량에 의한 가감범위를 넓혔다.

한편 특수건물 時價 基準額表는 종전 坪當價額이 미터법에 맞추어 m²당 가액으로 바뀐과 동시에 價額을 현실화하여 전반적으로 평균 133% 상향 조정하였다.

3. 協會費의 收入범위 및 出捐時期

保險業法의 관계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火保法 施行規則 第 3條 保險料 收入의 범위 조항중 “保險業法 第 14條 第 1項”이 “保險業法 第 17條 第 1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火保法 施行令 第 10條의 第 2項 신설로 同 施行規則 第 4條 協會費의 출연시기도 “令 第 10條 第 1項”이 “令 第 10條 第 1項 및 第 2項”으로 개정되었다.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 11208 호
1983년 8월 18일 개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 제 2 호 · 제 7 호 및 제 11 호중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한다.

제 2조제 1항제 8호중 “시장법 제 2조제 3호”를 “시장법 제 2조제 2호”로 하고, 동항 제 9호 및 제 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9조제 1항제 2호에 규정하는 유통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이상인 건물. 이 경우에 2이상의 업종이 같은 건물내에 있는 경우에 그 연면적은 2이상의 업종에 대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1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공장건물과 공업단지관리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중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에 소속된 모든 공장 및 그 부속건물

제 3조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대구시·인천시”를 “서울특별시·직할시”로 한다.

제 5조제 1항제 1호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 10조제 1항중 “보험업법 제 14조”를 “보험업법 제 17조”로 한다.

제 10조제 4항중 “제 3항”을 “제 4항”으로 하여 동항을 동조 제 5항으로 하고, 동조 제 3항을 동조 제 4항으로 하며, 동조 제 2항중 “제 1항”을 “제 1항 및 제 2항”으로 하여 동항을 동조 제 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 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수입보험료에 대한 협회비는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의 경감을 위하여 화재예방활동등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만원”을 “400만원”으로, “35만원”을 “350만원”으로, “30만원”을 “300만원”으로, “25만원”을 “250만원”으로, “21만원”을 “210만원”으로, “18만원”을 “180만원”으로, “15만원”을 “150만원”으로, “12만원”을 “120만원”으로, “9만원”을 “90만원”으로, “7만원”을 “70만원”으로, “4만원”을 “40만원”으로, “2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

재무부령 제 1590호

1983년 12월 15일 개정

제 2조의 2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 2항중 “제 1항”을 “제 1항제 3호”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①법 제 8조제 1항제 1호에 규정된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장의 기계설비 및 부대장치에 대한 평가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하고, 이에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1.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회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서에 의한 가액
2. 증원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가액
3. 제 1호 및 제 2호에 의한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특수건물시가결정기준액표(이하 “기준액표”라 한다)에 의한 가액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조 (보험료수입의 범위) 영 제 1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수입은 보험업법 제 1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협정에 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한 보험의 보험료에 의한다.

제 4조중 “영 제 10조제 2항”을 “영 제 10조제 1항 및 제 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